

TIER 1 | USCIRF-RECOMMENDED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의거하여 조직된 기관으로, 전 세계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실태를 감시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의 독립적이며 초당적인 위원회이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국제적인 표준을 기준으로 전 세계 종교나 신념의 자유가 위반되는 사례를 감시하고, 미 대통령, 국무장관, 의회에 정책권고를 한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국무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2017년 연례 보고서는 현지에서 자행되는 침해 실태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미국 정부에 독립적인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들과 전문 요원들의 작업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연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으나, 일부 중대한 사건 중에는 이 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도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전화 202-786-0611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

북한

개요: 북한은 변함 없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의 하나이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심각한 인권탄압을 꼽을 수 있다. 북한에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상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북한 정권은 종교가 정권 자체와 국가의 생존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 정권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체포, 고문, 투옥, 때로는 처형의 방법을 통해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처벌하고 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일단 투옥되면 보통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무자비한 처우를 받는다.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침해해 온 북한 정권의 오래도록 지속된 관행을 근거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17년에도 역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특별관심대상국(CPC)”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6년 10월에 지정하였다.

미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을 지속적으로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한다.
- 북한 정권의 특정 관계자 및 정부기관, 또는 그들과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특히 종교나 신념의 자유 탄압 또는 이러한 탄압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러한 제재는 대통령령, 2016년 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관리하는 특별지정국민(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목록, 국제종교자유법 제 604(a)조 및 국제매그니츠키인권책임법안(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에 따른 비자거부, 국제매그니츠키법안에 따른 자산동결, 기타 의회의 조치 또는 UN에서의 조치 등의 수단 중 하나 또는 이상을 통해 가하는 제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에 관한 UN 위원회의 2014년 조사보고서\(COI\)](#) 결과 중 종교나 신념의 자유 탄압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이행 여부를 추적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후속 UN 조사를 요청하고,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와 유사하며 그와 연계된 실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 가능한 경우 언제든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담당 특별대사(Ambassador-at-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북한과의 협상이나 북한에 관한 공식적/비공식적 회담에 참석시켜 인권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을 논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타당한 경우 인권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을 비핵화 및 안보에 관한 다자간 회담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역내 동맹들과 협력하여 인권 및 인도주의 관련 문제,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정한 우려를 제기하고, 양심수 석방 및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폐쇄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 북한 내 그리고 국경 지역에 송신되는 기존의 라디오 프로그램 및 휴대전화, USB 메모리, DVD 등의 정보기술 확산, 인터넷 접속 개선 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종교의 자유 침해를 포함하여 가장 악명 높은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지지를 독려하고 중국이 자국 내 북한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 즉, 이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을 허용하고 1951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및/또는 유엔고문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반하는 강제 송환을 중단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이 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017년 이후에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UN 위원회의 2014년 조사보고서의 최신 문구 및/또는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자금을 승인해야 한다.

배경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표면적으로는 헌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처럼 하면서)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정권은 주체사상이라는 정권이 창조해 낸 이념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다. 북한 정권은 사회 전반에 대한 이와 같은 독단적인 억압을 통해 과거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현재의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서도 우상에 버금가는 숭배와 신격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성심을 강요함으로써 개개인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실천할 여지도, 종교나 신념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나 다른 신념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등 보통은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한다. 가장 최근 발표된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총 인구는 거의 2,500만 명이 넘는데, 북한 사회가 극도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신자의 통계는 너무 오래 되었고 확인이 힘든 상황이다. 유엔은 기독교인을 북한 인구의 2 퍼센트 미만인 20-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교 및 유교, 무속신앙, 그리고 민속신앙인 천도교의 역사도 긴 편이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도발하기 위한 공격적인 발언과 행동의 수위를 높여가며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내부적으로 그 정당성을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 5월, 북한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식적으로 노동당은 조직 정비, 의제 설정, 지도부 역할 확립을 위한 당대회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개최된 이례적인 당대회 역시 김정은의 권력 다지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분석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북한에서는 고위급 외교관 및 이례적인 단체 탈북 등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은 탈북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2016년 4월에는 중국 닝보의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주민 13명이 탈출했고, 2016년 8월에는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망명하여

가족과 함께 남한에 도착한 후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2016년 10월에는 베이징 주재 대사관 직원 또는 다른 북한 정부 직원이 최대 3명 망명했다고 보도되었다.

2016년,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아르헨티나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를 북한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으로 새롭게 임명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2016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결의안 31/18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서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침해를 포함한 오랜 인권탄압을 규탄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특별보고관과 함께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배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전문가 그룹은 2017년 2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탄압을 중심으로 “[북한] 내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6년 1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9월에 발생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2016년 12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3차 연례 회의를 개최한 당시 중국을 비롯한 북한의 일부 동맹국들은 북한의 인권탄압에 관한 논의를 막으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였다.

2016-2017년 종교의 자유 실태

기독교에 대한 정권의 통제 및 억압: 모든 종교단체는 정권에서 통제하는 예배 장소 몇 곳을 통해서가 아니면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곳에서의 활동마저도 철저하게 통제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에 따르면, 종교를 전파하고, 종교와 관련된 물품 소지하며, 기도, 찬송 등의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하고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를 서방, 특히 미국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철저한 감시를 통해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을 파악하고 색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포한 사람은 종종 (해당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가족까지 투옥한다. 미 국무부 추산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현재 관리소라는 정치범 수용소에 주민 약 8-12만 명을 구금하고 있으며, 이들 중 수 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가혹한 노동이나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위치와 신도의 수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에는 개신교 교회 세 곳, 천주교회 한 곳,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모두 정권의 통제로 운영된다.

2016년 12월, 캐나다 외교관들이 국가 전복 활동 및 북한 지도부 모욕 혐의로 2015년 12월 종신노역형을 선고 받은 한국 태생의 캐나다 시민인 임현수 목사를 면회하기 위해 방북했다. 2016년 11월,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임 목사를 대신해 북한 외무성과 만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임 목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 스웨덴은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캐나다, 호주,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면서 이들 국가의 시민들에게 영사 업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북중 국경 부근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장백교회 조선족 한총렬 목사의 사망에 관해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다. 2016년 4월 한 목사의 시신이 발견된 후 인권 운동가들은 북한 요원들이 중국 내 탈북자들을 지원한 한 목사를 살해했다고 비난했다. 북한 정권은 한 목사의 사망에 대한 개입을 부인하며 남한이 북한을 모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내 북한 난민: 중국 정부는 국경을 넘어 난민이 대거 유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오래 동안 우려하고 있다. 2016년, 북중 국경 지역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한 후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일부 종교 자료들도 보통 국경을 따라 유입된다. 탈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국경을 건너려다 발각되거나 중국에서 강제 복송되는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선교사와 접촉했거나 종교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더욱 심한 처벌을 받는다. 중국으로 탈북하려는 주민들을 추적해 체포하고 강제 소환하기 위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과 공모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

최근 몇 년 간,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안보와 인권 문제에 대해 안보를 더 중요한 사안으로 우선시하기 보다는 서로 관련된 사안으로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맞았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인식을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높이고 이 두 사안 모두에 대한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한국, 일본, 유엔 등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권탄압 및 반정부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2016년,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인권탄압에 관여한 북한 내 특정 인물과 기관을 파악하여 제재를 가하였다. 2016년 7월, 국무부는 2016년 북한제재및정책개선법(P.L. 114-122)에

따라 북한의 인권침해 및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권침해 및 검열을 자행한 인물 및 국가기관 23명(곳)을 지목하였으며, 재무부는 그 중 15명(곳)을 외국자산통제실에서 관리하는 “특별지정국민” 목록에 올렸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 중의 한 명이다. 2017년 1월, 국무부가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재무부가 개인 7명과 정부기관 두 곳을 SDN에 올렸다. 국무부는 이 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7 회계연도 국무부권한법(Fiscal Year 2017 Department of State Authorities Act, P.L. 114-323)을 서명하여 발효시켰는데, 이 법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범죄를 확인하고, 국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이 “전 세계 북한의 자산을 겨냥하고, 인권탄압을 자행한 특정인에 대한 제재대상을 지정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7년 회계연도 말에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P.L. 112-172)이 만료되어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재승인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에 관한 기본 법인 북한인권법은 2004년 발효되었고, 2008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연장되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개선하고, 국무부 내 특사의 직책을 마련하며, 미국 내 북한 난민들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12년 재승인 시에는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 소환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사가 표명되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으면서 이들을 일상적으로 감금하고,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자백을 강요한다. 2016년 3월, 북한은 버지니아 주립대생인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에게 평양호텔에 걸린 정치 현수막을 찢은 것에 대해 “적대 행위” 혐의로 15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했다. 그에 앞서 2월, 웜비어는 자신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자백했다. 2016년 4월에는 북한 최고재판소가 한국 태생의 미국 시민인 김동철에게 간첩 혐의로 10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했다. 북한 정권은 이 두 사람을 해외 언론 앞에서 걸어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했다. 2016년 6월까지 북한은 미국 선교사로 과거 북한에 억류된 바 있는 케네스 배(Kenneth Bae)가 북한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는 한 위 두 사람의 석방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정권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15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 받고 2년간 복역한 후 2014년 11월 석방된 케네스 배는 자신의 체포와 투옥에 관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발표했다.

2016년 2월과 10월, 국무부는 재차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특별관심대상국 지정에 따르는 제재를 가하는 대신 일관되게 기존의 제재를 적용해 왔으며, 이 경우에는 1974년 무역법의 잭슨-배닉 개정조항(Jackson-Vanik amendment)을 통해 제재를 가해 왔다. 잭슨-배닉법은 의회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후 북한과 쿠바에 대해 통상적인 무역관계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었다.